포제스 한강 입주자모집공고

[입주자모집공고일 : 2024.01.12.(금)]

청약Home 앱 설치 바로가기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청약 등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잘못 안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결제된 상담내용은 반드시 청약 종료이 입주자모집 공고문과 청약신청 시 입주자로 등록하셔야 할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약결제된 상담내용은 반드시 청약 종료이 입주자모집 공고문과 청약신청 시 입주자로 등록하셔야 할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포제스 한강" 주택전시관 사전방문 예약제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 포제스 한강 홈페이지(https://포제스한강.com) 또는 대표번호(1899-7099)에서 방문가능일을 확인하시고 사전에 방문예약 예약 후 내방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방문 예약은 해당 날짜 및 시간 이외에는 관람이 불가합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잘못 안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결제된 상담내용은 반드시 청약 종료이 입주자모집 공고문과 청약신청 시 입주자로 등록하셔야 할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약결제된 상담내용은 반드시 청약 종료이 입주자모집 공고문과 청약신청 시 입주자로 등록하셔야 할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수도 및 내부시공업체구성 및 사양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기준으로 하며 견본주택 및 홍보물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는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청약과열지역으로 2024.01.12.(금) 이후 발표되는 주택은 재당첨 제한 적용을 받게 되오니 청약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주택법 제57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전매제한 기간이 적용되오니 청약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주택법 제57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실거주의무 기간이 적용되오니 청약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2019.0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제1항에 따라 당첨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주택소재지 및 인근 지역(「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됩니다. 다만 청약신청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약이 가능하오니 청약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2019.12.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제1항에 따라 당첨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주택소재지 및 인근 지역(「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됩니다. 다만 청약신청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약이 가능하오니 청약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2020.06.19.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제1항에 따라 당첨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주택소재지 및 인근 지역(「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됩니다. 다만 청약신청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약이 가능하오니 청약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2021.12.2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제1항에 따라 당첨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주택소재지 및 인근 지역(「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됩니다. 다만 청약신청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약이 가능하오니 청약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2023.05.1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11호에 의거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일부를 제외한 모든 청약신청자에 대하여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됩니다. 다만 청약신청일 현재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일부를 제외한 모든 청약신청자에 대하여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됩니다.

■ 2023.05.1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11호에 의거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일부를 제외한 모든 청약신청자에 대하여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됩니다.

■ 청약신청 시 공인인증서는 청약 당일 청약자의 명의로 발급된 공동인증서(구 범용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중 청약자가 선택하는 1개만 해당하는 인증서를 등록하여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시 주택형별 신청하시는 신청자일 청약신청접수일 이전 무주택기간 기산일에 청약통장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무주택세대 인정되지 않으며 청약통장 가입은 청약 1순위 요건이 아니므로 청약통장 가입 유무와 관계없이 청약접수일 기준 무주택세대주 또는 무주택세대원 요건을 갖춘 분은 청약 1순위 요건을 갖춘 것으로 청약 1순위 청약접수 하셔야 합니다.

■ 청약신청 시 주택형별 신청하시는 신청자일 청약신청접수일 이전 무주택기간 기산일에 청약통장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무주택세대 인정되지 않으며 청약통장 가입은 청약 1순위 요건이 아니므로 청약통장 가입 유무와 관계없이 청약접수일 기준 무주택세대주 또는 무주택세대원 요건을 갖춘 분은 청약 1순위 요건을 갖춘 것으로 청약 1순위 청약접수 하셔야 합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청약자격 상 거주지역)은 청약자격 및 당첨자 선정 시 중요한 사항이므로 청약신청 시